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6일, 임의자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사회)

제2차 전체회의 (2025. 1.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8차 전체회의 (2025.1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의자의원)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찢길사고(일

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찾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생태통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중 535개(95%)가 개선·보완 요청을 받는 등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생태통로 설치·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 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淤)·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하며¹⁾,

현행법 제45조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28조²⁾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설치되는 법정생태통로와 그 외의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설치하거나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일반생태통로로 구분됨.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淤)·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서식 중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중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중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 ④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생태통로의 구분]

구분	법정생태통로	일반생태통로
설치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등
설치대상	○백두대간 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 등급 권역, 자연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로드킬 다발지역 등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한 생태통로	○법정생태통로 설치 대상지역外 지역에 설치한 생태통로 - 주로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설치하거나, 지자체 등이 기관별 자체적으로 설치
설치·관리주체	○도로 등 설치·관리기관(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도로 등 설치·관리기관(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 출처: 환경부

[전국생태통로 설치 현황]

(단위: 개소, 2023.8.기준)

구분	생태통로 유형		계	비율(%)
	육교형	터널형		
법정	57	20	77	13.7%
일반	308	179	487	86.3%
계	365	199	564	100%

※ 출처: 환경부

또한, 현행법은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은 조사결과를 생태통로 관리대장에 작성하거나 생태통로 네트워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³⁾,

3)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

2023년 8월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전국 생태통로 실태조사 결과 생태통로 564개소 중 36%인 205개소에 대한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⁴⁾.

[생태통로 관리대장 작성현황]

구분	법정	일 반
관 리 대 장 작 성	•77개소 중 62개소 작성(81%) 13개소 미작성, 2개소 작성 비대상	•487개소중 293개소 작성(61%) 192개소 미작성, 2개소 비대상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①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동 시스템을 통하여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④

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태통로의 설치·관리 현황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p.27

생태통로 설치·관리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조성 후 3년 동안 계절별 1회 이상, 3년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생태통로 관리대장에 작성하거나 생태통로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국립생태원)는 등록된 결과와 환경부(국립생태원)가 실시한 설치·관리 실태 조사(주기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결과를 기반으로 설치·관리기관에게 생태통로 개선·보완을 요청하는데 활용한다.

4)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생태통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국립생태원에 위탁하고 있음.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8.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9.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 및 생태통로 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